



#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본 헌장은 캐나다가 신의 지존성과 법치를 인정하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제정하였다.

## 권리와 자유의 보장

1.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은 자유민주적 사회에서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법정 제한 하에 헌장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 기본적 자유

2.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자유를 가진다. (가) 양심과 종교의 자유, (나) 언론과 기타 의사소통 매체의 자유를 포함한 사상, 신념,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라) 결사의 자유.

## 민주적 권리

3. 모든 캐나다 국민은 연방하원 또는 주입법부 의원 선거권 및 입회권을 가진다. 4.(1) 어떠한 연방하원 및 주입법부도 의원 총선거 왕명 봉헌일로 정해진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해 존속하지 않는다. (2) 전쟁, 침입, 폭동 등이 실지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연방하원 혹은 주입법부 의원 중 삼 분의 일을 넘는 수가 투표로 반대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 연방하원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주입법부에는 해당 입법기관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해 존속할 수 있다. 5. 연방의회와 각 입법기관은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 개회하여야 한다.

## 이동의 권리

6.(1) 모든 캐나다 국가는 캐나다 입국, 체재 및 출국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캐나다 국민과 영주권자는 (가) 어느 주로든 이주하고 거주지를 정할 권리 및 (나) 어느 주에서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3) 제(2)항에 명시된 권리에는 (가) 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며 현재 거주하거나 이전에 거주한 주를 주된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일체의 법 또는 관행, 및 (나)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 자격으로서 함당한 거주 요구를 규정하는 법 일체의 적용을 받는다. (4) 제(2)항과 제(3)항은 주의 취업률이 캐나다의 취업률보다 낮은 경우 그 주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개인의 여건을 주 내에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는 일체의 법,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

## 법적 권리

7. 모든 사람은 개인의 생활,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가 가진다. 8. 모든 사람은 부당한 수색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가진다. 9. 모든 사람은 무단으로 구금되거나 수감되지 않도록 권리가 가진다. 10. 모든 사람은 체포나 구금 시 다음과 같은 권리가 가진다. (가) 체포나 구금의 이유를 즉시 알 권리, (나) 지체 없이 변호인을 고용할 권리와 그런 권리가 있음을 알 권리, 및 (다) 인신보호율에 의하여 구금의 정당성을 판정하고 구금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석방될 권리, 11. 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부당한 지체 없이 해당 범죄가 무엇인지 알 권리, (나) 타당한 시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다) 해당 범죄와 관련한 재판 절차에서 해당자에 대하여 불리한 증인이 되어줄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라) 독립되고 비편파적인 재판 기관에 의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리에서 법에 따라 유죄임이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정정될 권리, (마) 합당한 보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바) 고법무관 앞에서 군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최고형이 징역 5년 내지 그보다 중한 형인 경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의 혜택을 받을 권리, (사) 작위 또는 부작위의 시점에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캐나다 법이나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거나 국가 공동체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법의 원칙에 의한 범죄가 아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권리, (아) 해당 범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해당 범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법벌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받거나 해당 법벌을 받지 않을 권리, (자) 해당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이 법령 시점과 선고 시점 간에 개정된 경우 더 적은



현별의 혜택을 받을 권리, 12. 모든 사람은 잔인하고 비정상적 대우나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가진다. 13. 재판 절차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위증 혹은 상반되는 증거 제시에 대한 기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다른 절차에서 그렇게 제시된 일체의 불리한 증거가 해당 증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하여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가진다. 14. 어떠한 재판 절차에서도 해당 절차 진행 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당사자 혹은 증인은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

## 평등의 권리

15.(1)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에서 평등하며 차별 없이, 특히 인종, 출신국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혹은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장애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와 평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 (2) 제(1)항은 인종, 출신국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혹은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들을 포함하여 불이익을 받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는 일체의 법,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

## 캐나다의 공식 언어

16.(1) 영어와 불어는 캐나다의 공식 언어이며 캐나다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평등한 지위와 평등한 권리 및 특권을 가진다. (2) 영어와 불어는 뉴브런즈윅주의 공식 언어이며 뉴브런즈윅주 입법기관과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평등한 지위와 평등한 권리 및 특권을 가진다. (3) 본 헌장의 어떠한 부분도 영어와 불어의 평등한 지위나 사용을 진천시키는 연방의회 혹은 주입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16.1.(1) 뉴브런즈윅주의 영어권 공동체와 불어권 공동체는 평등한 지위와 평등한 권리 및 특권을 가지며, 별개의 교육 기관과 해당 공동체의 보존과 진흥에 필요한 별개의 문화 기관을 가질 권리도 가진다. (4) 제(1)항에서 언급된 지위, 권리 및 특권을 보존하고 진흥할 뉴브런즈윅주 입법기관과 정부의 역할은 확인된다. 17.(1) 모든 사람은 연방의회의 모든 토의와 기타 의사에서 영어나 불어를 사용할 권리가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뉴브런즈윅주 입법기관의 모든 토의와 기타 의사에서 영어나 불어를 사용할 권리가 가진다. 18.(1) 연방의회의 법령, 기록 및 의사록은 영어와 불어로 인쇄, 출판되며 두 언어본은 모두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2) 뉴브런즈윅주 입법기관의 법령, 기록 및 의사록은 영어와 불어로 인쇄, 출판되며 두 언어본은 모두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19.(1) 연방의회에서 설립한 모든 법정에서는, 혹은 해당 법정에서의 모든 항법 또는 해당 법정에서 비롯되는 모든 절차에서는 누구든지 영어나 불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뉴브런즈윅주의 모든 법정에서는, 혹은 해당 법정에서의 모든 항법 또는 해당 법정에서 비롯되는 모든

절차에서는 누구든지 영어나 불어를 사용할 수 있다. 20.(1) 캐나다 대중의 일원인 자는 누구든지 영어나 불어로 캐나다 연방의회 또는 연방정부 기관의 모든 본부 또는 중앙 사무소와 의사소통하고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다른 사무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 해당 언어로 해당 사무소와 의사소통하고 해당 사무소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수요가 상당한 경우, 또는 (3) 해당 사무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사무소와 의사소통하고 해당 사무소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데 영어와 불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뉴브런즈윅주 대중의 일원인 자는 누구든지 영어나 불어로 뉴브런즈윅주 입법기관 또는 정부 기관의 모든 사무소와 의사소통하고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가진다. 21.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의 어떠한 부분도 캐나다 헌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존재하거나 존속하는 영어와 불어 혹은 그 중 하나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 특권 혹은 의무도 폐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22.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의 어떠한 부분도 영어나 불어가 아닌 언어에 관하여 본 헌장의 효력 발생 이전 또는 이후에 획득되거나 향유된 어떠한 법적 혹은 관례적 권리나 특권을 폐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 소수 언어 교육의 권리

23.(1) 캐나다 국민으로서 (가) 제1 언어로서 배우고 현재도 이해하는 언어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영어권 혹은 불어권 소수 주민의 언어인 자, 혹은 (나) 캐나다에서 영어나 불어로 초등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을 받았을 때 사용한 언어가 그 주의 영어권 혹은 불어권 소수 주민의 언어인 주에서 거주하는 자는, 자신의 자녀에게 그 주에서 해당 언어로 초등 교육과 중고등 교육을 받게 할 권리가 가진다. (2) 캐나다 국민으로서 자신의 어느 자녀나 캐나다에서 영어나 불어로 초등 교육이나 중고등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자신의 모든 자녀에게 같은 언어로 초등 교육과 중고등 교육을 받게 할 권리가 가진다. (3)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주의 영어권 혹은 불어권 소수 주민의 언어로 초등 교육과 중고등 교육을 받게 할 캐나다 국민의 권리는 (가) 그 주에서 그런 권리가 가진 국민의 자녀 수가 그들에게 소수 언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자금을 사용할 근거가 될 만큼 충분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든 적용되며, (나) 그러한 자녀 수가 근거가 될 경우 그들에게 공공 자금으로 제공되는 소수 언어 교육 시설에서 해당 교육을 받게 할 권리가 포함된다.

## 집행

24.(1) 본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가 침해되고 부인되는 자는 누구든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법원이 해당 상황에서 적정하고 공정하다고 간주하는 구제 수단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본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증거가 얻어진 것이라고 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재판 절차에서 그 증거를 인정한다면 사법 제도의 평판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거는 배제된다.

## 일반

25. 본 헌장에서 특정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다음의 권리와 자유를 포함하여 캐나다 원주민들과 관련한 토착민의 권리나 자유, 조약에 기초한 권리나 자유, 혹은 기타 권리나 자유를 일체 폐기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가) 1763년 10 월 일 칙령에 의하여 현재까지 인정된 일체의 권리나 자유, 및 (나) 토지 청구 합의서에 의하여 현존하거나 획득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권리나 자유. 26. 본 헌장에서 특정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캐나다 내에 존재하는 다른 권리나 자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7. 본 헌장은 캐나다의 다문화적 유산 보존 및 보강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28. 본 헌장의 어떠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본 헌장에 언급된 권리와 자유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보장된다. 29. 본 헌장의 어떠한 부분도 특정 교파, 분리파 또는 소수 반대파에 속하는 학교들과 관련하여 캐나다 헌법이 보장하거나 그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체의 권리나 특권을 폐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0. 본 헌장에서 주 또는 주의 입법부나 입법기관에 대한 언급에는 경우에 따라 유콘 준주와 노스웨스트 준주 혹은 그들의 해당 입법 당국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31. 본 헌장의 어떠한 부분도 어떠한 단체나 당국의 입법상 권력을 확대하지 않는다.

## 헌장의 적용

32.(1) 본 헌장은 (가) 유콘 준주와 노스웨스트 준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비롯한 연방의회 권한 내의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캐나다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에 적용되며, (나) 각 주 입법기관 권한 내의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각 주의 입법기관과 정부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본 조가 발효된 후 3년이 지나야 발효한다. 33.(1) 연방의회 혹은 주입법기관은 연방의회법 혹은 주입법기관법에서 그 법 혹은 그 법의 규정이 본 헌장의 제2조 혹은 제7조에서 제15조까지에 포함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경우에 따라 명백히 선언할 수 있다. (2) 본 조에 의한 선언이 법 혹은 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 경우, 그 법 혹은 법의 규정은 그 선언에서 언급된 본 헌장의 해당 규정이 없었더라면 가졌을 효력을 가진다. (3) 제(1)항에 의한 선언은 발효 후 5년 후 혹은 그 선언에 명시될 수 있는 더 이른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4) 연방의회 혹은 주입법기관은 제(1)항에 의한 선언을 재제정할 수 있다. (5) 제(3)항은 제(4)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제정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 인용

34. 이 부분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으로 인용될 수 있다.

“이제는 각자의 지역적 충성심을 넘어 이와 같은 자유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한 국가를 자부할 만한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가 마련되도록, 우리를 캐나다인으로서 한데 묶는 기본 원칙과 기본 가치, 그리고 신념을 확립할 때입니다.”

P.E. Trudeau 1981